

2024년 중앙 및 지역 R&D과제 기획·유치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는 『2024년 중앙 및 지역 R&D 과제 기획·유치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혁신적인 R&D 기획 발굴을 통해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기업 및 대학, 연구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4년 6월 27일
(재)대구테크노파크 원장

1 사업목적

- 다양한 R&D과제 유치를 통한 지역기업의 사업화 기반 확립 및 지역산업·경제 활성화
- 혁신적인 R&D발굴을 위한 과제 유형별 타겟팅을 통해 포괄적·보편적 지원이 아닌 맞춤형·집중적 지원

2 지원개요

- 지원규모 : 총 2개 내외(과제당 최대 700만원)
- 지원기간 : 협약일 ~ 2024. 10. 31(목)까지
- 지원대상 : 사업 공고일 현재 대구지역 내 본사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, 대구지역내 주소지를 둔 대학,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또는 단독
 - * 주관기업은 반드시 대구광역시 내 주소지를 둔 본사 및 사업장(부설연구소, 지역센터 등)이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

□ 지원분야

- 5대신산업 : UAM(도심항공교통), ABB(인공지능/블록체인/빅데이터), 반도체, 로봇, 헬스케어
- 전통산업 : 소재·부품, 섬유, 지능형기계, 도시형산업(뷰티, 식품 등)
- ※ 우대사항 : 기업부설연구소, 벤처기업/이노비즈

□ 지원내용

구 분	지원대상	대상사업	지원규모
첫걸음 (지역)과제	- 지역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소기업* 단독 *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[별표 3] 기준	-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다임돌) - 지역산업육성사업(주력·광역권) - 대구시 자체 R&D사업	- 과제 발굴·기획/전문가 컨설팅 및 회의비 등 - 과제당 최대 500만원
기반 (소형)과제	- 지역 중소기업* 단독 또는 산·학·연 컨소시엄 * 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 [별표 1·3] 기준	- 중앙부처 주도 R&D사업 중 사업비(국비지원금) 5억원 미만 * 첫걸음과제 대상사업 제외	- 기획연구회 자체구성·운영예산 지원으로 - 과제당 최대 700만원

- 중앙 및 지역 R&D과제발굴·기획에 필요한 기획연구회 운영 및 전문가 매칭에 필요한 예산 지원
 - 인쇄 및 도서구입비, 세미나개최비, 선행기술조사비, 회의수당, 전문가 활용비, 원고 및 번역비 등
 - 과제관련 회의비, 사무용품비
 - ※ 기업부담금 없이 지원금 선지급(부가세는 사후환급 세금이므로 기업에서 부담)
- 첫걸음 과제 발굴·기획을 위한 컨설팅(코칭)자문단과 기반·확산과제 발굴·기획을 위한 기획연구회 구성 지원
- 지원기간 종료 후 제출한 기획보고서(연구계획서)를 중앙부처별 전담기관 소속 전문가들(PD, 단장 등)에게 개별 검토받아 과제기획 완성도 제고

□ 선정 및 지원방법

- 평가방법 : 산·학·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(서류심사)를 통해 과제선정 및 지원금 조정
- 평가기준 : 정책적 적합성/부합성, 사업계획의 구체성/우수성, 추진전략의 적정성/타당성, 사업화가능성, 파급효과, 연구회 구성/운영

○ 지원방법 : 사업비는 협약 후 대구TP에서 선지급하고 사업수행 후 보고서 검토 및 회계법인을 통해 후정산

□ 추진일정



※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3 신청 및 제출방법

□ 접수기간 : 2024. 6. 27.(목) ~ 2024. 7. 12.(금) 17:00까지

□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kei96306@dgtp.or.kr)

- ① 사업공고 ➡ 붙임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
- ② 신청서류 작성 후 직인날인하고 첨부서류 준비
- ③ 신청서류, 첨부서류를 1개 파일로 합쳐서 스캔(pdf)
- ④ kei96306@dgtp.or.kr로 접수 ➡ 담당자 서류확인 ➡ 보완요청 ➡ 보완완료

※ 이메일제목 : R&D기획지원사업 신청_기업명

※ 스캔자료가 불명확하여 검토가 어려울 경우, 서류 원본제출(우편)을 요청할 수 있음

□ 제출서류

- ① 지원사업 신청서 1부(실무담당자 명함 첨부)
-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
- ③ 사업참여 및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 1부
-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추가제출)
- ⑤ 2023년도 표준재무제표 사본 1부
* 2023년 재무제표 확인이 안 될 경우, 2022년 표준재무제표 사본 제출
- ⑥ 국세/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* 증명서 유효기간은 '24.04월 이후
- ⑦ 우대사항 관련 인증서, 협약서 등 각 1부
- ⑧ 회사소개자료 1부(있을 경우)
- ⑨ 대상사업 모집공고문 1부(신청자격 확인용)

□ 문의처 : 053-757-3773(글로벌정책지원본부 연구개발지원센터)

4 대상사업 선택방법

- * 대상사업이란, 내년 주관기업(기관)이 신청할 R&D사업을 뜻함
- * 주관기업(기관)이 대상사업의 신청자격이 안될 경우, 선정평가에서 탈락할 수 있음

□ 첫걸음(지역)과제

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(첫걸음)

→ 창업 7년 미만이면서 전년매출 20억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

② 지역특화산업육성+(R&D) → 대구지역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

③ 대구시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→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

④ 기타 대구시 R&D사업 → 관련 홈페이지 사업공고 확인

□ 기반 과제

① 첨부한 <2024 정부연구개발사업 캘린더>에서 사업명 선택

② 사업주관 부처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 검색

③ 사업별 신청자격 확인 후, 총사업비 중 국비지원금 검색

- 국비지원금 5억 미만 → 기반(소형)과제

5 유의사항

□ 본 사업은 사업화지원(시제품제작, 마케팅지원 등)이 아닌, R&D연구계획서 작성을 위한 기획지원 사업임

□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, 신청 및 지원 제외 대상이 추후에 확인 될 경우에도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

□ 신청 구비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하고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□ 사업 종료 후 사업비 정산결과 미집행 및 부정집행의 경우 반납

6 지원(신청) 제외대상

* 제외대상 안내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(기관)에게 있음

-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.중복이 확인될 경우
-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신청기업(기관) 중 아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
 -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,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.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파산.회생절차.개인회생절차의 개시,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 - 최근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,000% 이상,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절"인 경우, **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**
 - * 자본전액잠식이란, 결산재무제표에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경우(단,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예외)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
 - 최근 3년간 「근로기준법」제43조3 및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
 - 최근 3년간 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9조의2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산업재해다발 사업장에 속하는 경우
 - 최근 3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, 최근 1년간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로 인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
 - 그 외 현행 법령위반,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 보도, 소송,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- 협약 이후라도 지원대상 제외에 해당됨을 발견 즉시 사업비 전액을 환수
- 지원대상 제외에 신청기관, 신청기관장,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되며, 주관이 아닌 기관 또는 책임자가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가능
- 과제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해 "위조, 변조, 표절,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"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